

#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6,653,880	10,699,616
일반회계	343,449,338	10,303,480
특별회계	13,204,542	396,136
기타특별회계	13,204,542	396,13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96,456	71,894
의료급여특별회계	1,276,303	38,289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895,015	26,850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0	600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704,800	21,144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2,287,452	68,624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89,169	2,675
장흥담관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84,565	74,537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957,492	88,72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3,290	2,79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86,21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